##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42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1.

발 의 자:김상훈·김선교·윤한홍

고동진 · 김소희 · 권영진

주호영 · 이달희 · 이헌승

임종득 • 권성동 • 권영세

송언석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10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 금융위원회가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서비스 중 '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'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,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0조도 적용되도록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제2항 삭제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423호)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수익증권의 발행) ① (생	제32조(수익증권의 발행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	<u>&lt;</u> 삭 제>
발행에 관하여는 「자본시장과	
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	
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	
용하지 아니한다.	